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8가단4856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

담당변호사 육삼신, 이명우, 최윤희, 박동인

원고보조참가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9. 7. 4.

판결 선고2019. 8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,181,150원과 그 중 158,4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9.부터 2018. 8. 28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,181,150원과 그 중 158,4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나. 판단

1)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, 갑가제1 내지 8호증, 을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조참가인 B로 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계약이행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, 피고 회사가 위 B와 체결한 상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2017. 12. 15.까지 끝마치지 못하였고, 2017. 12. 30. 위 신축공사계약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실, 이에 B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비용을 지급한 다음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, 원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, 이에 원고가 위 B에게 보험가입금액인 158,4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.

2)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158,400,000원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. 7. 8.까지의 지연손해금 781,150원의 합계금 159,181,150원과 그 중 지급보험금 158,400,000원에 대한 2018. 7. 9.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. 8. 28.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들의 주장

피고 회사가 완성하지 못한 잔여 공사금액이 44,279,210원에 불과하고, 위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도 위 B가 발주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. 따라서 피고들은 위 잔여 공사금액 44,279,210원에 한하여 구상에 응할 수 있을 뿐이다.

나. 판단

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위 B가 위 신축공사를 완료한 때는 2018. 2. 10.이고, 피고 회사에 대한 지체상금은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를 포기한 다음날인 2018. 1. 1.부터 계산하고 있는바, 그 금액은 97,416,000원[=지체일수 41일×1일 2,376,000원(=공사대금 792,000,000원×3/1,000)]에 이른다. 또한,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2017. 11. 20.경까지 위 B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747,720,790원인데, 이는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의 총계일 뿐 그 금액 상당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.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7. 12. 1.까지 위 B는 석재공사, 타일공사, 수장공사, 전등설치 등에 합계 4,22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. 또한, 위 B는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 중단 전후로 이미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·정산하지 않은 공사비 합계 113,554,000원, 새시 및 유리 관련 공사대금으로 1,000만 원, 정화조 관련 공사대금으로 700만 원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각각 지급하였다. 한편,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를 중단할 무렵 미시공 부분은 냉난방기공사 부분 13,686,000원 상당, 식당 마감공사 부분 2,500만 원 상당, 지붕공사 부분 1,500만 원 상당, 베란다 비가림막공사 부분 1,000만 원 상당이다.

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, 피고 회사가 위 신축공사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지체상금 등의 합계액으로써 위 보증보험금 158,000,000원을 훨씬 상회한다.

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태업

별지